

# 의 결



국민권익위원회

# 국 민 권 의 위 원 회

## 제 1 소 위 원 회

### 의 결

의안번호 제2021-1소위35-행02호

민원표시 2AA-2107-0075712 촉탁계약직 평가 관련 신체검사 비용 배상 요청

신 청 인 A

피신청인 B

의 결 일 2021. 10. 12.

#### 주 문

피신청인에게, 신청인을 포함한 탈락자 전원에게 '2021년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평가' 과정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.

#### 이 유

##### 1. 신청취지

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'2021년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'(이하 '이 민원 평가'라 한다)에 참여하여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직무수행계획서와 함께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바 있다. 통상 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요구하고, 피신청인의 「전임직·지원직·별정직 직원 채용관리지침」(이하 '이 민원 지침'이라 한다)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을 포함한 이 민원 평가의 대상자 44명 전원에게 신체검사(이하 '이 민원 검사'라 한다)를 받도록 요구했고 이 중 4명만 최종 합격하였다.

이 민원 지침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으로 시행된 이 민원 검사로 인해 신청인을 포함한 이 민원 평가의 탈락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, 시간낭비 등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.

## 2. 피신청인의 주장

가. 피신청인은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령 친화직종인 경비, 미화 업무 종사자(이하 '지원직 직원'이라 한다)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, 노사합의를 통해 만 65세 정년이 도래한 지원직 직원 대상으로 일정한 평가를 거쳐 축탁계약직으로 위촉,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

나. 신청인이 문제 제기한 이 민원 지침 제22조는 신규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 채용에 적용되는 규정이며, 축탁관리직 평가 및 전환은 이 민원 지침이 아닌 별도의 지원직 축탁계약직 평가제도(붙임 1 참조)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.

다. 축탁계약직 평가는 이 민원 검사를 포함하여 근무실적평가, 면접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민원 검사는 정년 이후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, 향후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.

## 3. 사실관계

가. 신청인의 인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2018. 1. 1. ○○○○주식회사 입사

- 2018. 1. 1. ~ 2021. 6. 30. 지원직 근무
- 2021. 4. 20. 2021년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평가 대상자로 확정
- 2021. 4. 23. 이 민원 검사(검사비용 45,000원)
- 2021. 4. 29. 최종합격에서 탈락 확인
- 2021. 5. 3. 촉탁계약직 위촉 불합격 통보

나. 피신청인의 이 민원 평가 관련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2017. 12. 6.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 및 정규직 전환 협의위원회 심의·의결
- 2020. 11. 20. 지원직 촉탁제도 개선(안) 관련 노사 협의
- 2021. 4. 20. 지원직 촉탁계약직 평가제도 개선계획 수립
- 2021. 4. 20. 2021년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평가 대상자 확정(44명) 및 평가 협조 요청 문서 시행
  - ※ 직무수행계획서 및 신체검사서 제출에 대해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
- 2021. 4. 21. 평가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
- 2021. 4. 21. ~ 26. 평가 대상자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및 평가자 근무실적평가 시행
- 2021. 4. 27. 면접평가 실시
- 2021. 4. 29. 촉탁계약직 심의위원회 개최(심의결과 : 4명 위촉)
- 2021. 5. 3. 촉탁계약직 위촉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, 최종합격자 및 불합격자 통보

#### 4. 판단

- ①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2015. 1. 1. 시행), ② 노

사협약 내용이나 평가제도 계획상 이 민원 검사는 평가절차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을 뿐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시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, 오히려 최종 합격자가 근무실적평가(60%)와 면접평가(40%)의 합산으로 선발되고 경쟁률이 약 9:1에 이르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민원 검사는 근무실적평가 및 면접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점, ③ 우리 위원회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채용절차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아, 공공기관에서 공무원·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여 반영토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점(2021. 7.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신청인을 포함한 탈락자 전원에게 신체검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.

## 5. 결론

그러므로, 이 민원 검사 비용을 배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